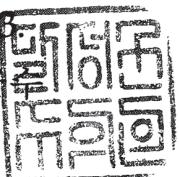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85
------------	------

제출일자 : 2017.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역 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관 범위를 상위법(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과 같이 확대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범위 확대
 -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제10조 일부 개정)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7. 3. 10. ~ 2017. 3. 30.(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
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제2항에 따른 수탁대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1. <u>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u></p> <p>2. <u>「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0조(관리·운영사무의 위탁) ①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1. <u>「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u></p> <p>2. <u>「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u></p> <p>3. <u>「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u></p> <p>4.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u></p> <p>5.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u></p> <p>6. <u>「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u></p> <p>7. <u>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u></p>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